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건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건축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, 연구기관,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고,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법 제25조제2항”을 “법 제25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제2호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
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4. 그 밖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한국건축규정의 관리) <u><신 설></u>	제22조(한국건축규정의 관리) ① <u>법 제2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 <u>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</u> <u>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</u> <u>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</u> <u>4. 그 밖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</u>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	② -----

[illegible]

③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2항-----